

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23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8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□ 제안사유

-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“하남시 택시쉼터” 준공 예정에 따라 운영·관리에 적합한 택시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『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추진근거

-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(운영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(적용범위) 및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□ 주요내용

- 시설현황
 - 위치 : 하남시 덕풍동 435-203, 지하1층
 - 시설규모 : 총면적 616.3㎡
 - 주요시설 : 사무실, 휴게실, 공용회의실, 체력단련실, 택시콜센터
- 위탁사무 :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- 위탁방법 : 수탁기관 공개모집 ⇒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

○ 소요예산 : 약 41,900천원(2022. 1. ~ 2022. 12. / 연간)

(단위 : 천원)

세부 항목	민간위탁금(307-05)		비고
	사업비	산출근거	
합계	41,900		
인건비	26,900	26,900천원 × 1명	관리인원 1명
운영비	15,000	15,000천원 × 1식	시설유지비, 공공요금, 집기류 등

□ 운영조건

- 수탁자는 택시쉼터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.
-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, 정기 보고하여야 함.
- 택시쉼터 운영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시간내에는 상주하여야 함.

□ 향후 추진 일정

- 2021. 9. :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
- 2021. 10. :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
- 2021. 11. ~ 12. :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
- 2022. 1. : 하남시 택시쉼터 개소 및 운영

□ 참고자료

- 붙임참고 : 관련조례

< 붙임 >

□ 하남시 택시쉘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4조(운영) ① 시장은 쉘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쉘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쉘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쉘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3조(적용범위)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